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20429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피 고 ○○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윤○○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3월분 주민세(종업원분) 59,508,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모회사로서 자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고, C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자 내지 임원으로서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외이사,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대표이사, 2015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사내이사를 역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7. 이사회 의사결정을 거쳐 C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발행 보통주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주식매매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

주식매매 옵션계약서

B 주식회사(등록번호 D 이하, 회사)의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A(이하, 갑)은 C(이하, 을)에게 제1조의 대상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제공하고, 관련하여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대상주식에 대한 매도청구권 Call Option)

- (1) 대상주식은 갑이 소유한 회사발행 보통주식 7,000,000주(이하, 대상주식)이다.
- (2) 을은 갑으로부터 본 합의서일로부터 36개월 내에 주당 4,020원(옵션계약서일 증가)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보유한다.
- (3) 을은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행사대금을 은행계좌(○○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주)A)에 입금하며, 갑은 을의 증권계좌로 행사주식의 주권을 이체한다.
- (4) 본 매도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 불가하다.

제2조(매도청구권 행사주식에 대한 후속합의)

- (1) 을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갑의 동의 없이는 매각할 수 없다.
- (2) 을이 본 계약 이전에 보유한 회사 주식에 대하여 매각 시 갑과 협의한다.
-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는 각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계약의 협상, 체결 이행에 소요된 각 당사자의 비용 또한 각자 부담한다.



다. C은 2019. 3. 20. 이 사건 옵션계약상 대상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매수청구권'이라 한다)를 행사하였고, 이에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주식매매계약서

B 주식회사(등록번호 D 이하, 회사)의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A(이하, 매도인)은 C (이하, 매수인)에게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고,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매매대상주식의 매매)

- (1) 매도인은 보통주식 7,000,000주(이하, 매매대상주식)를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 (2) 매매대상주식의 매매가액은 금 이백팔십일억사천만원(주당매매가격은 4,020원)이다.
주당매매가격 결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2017. 7. 7. 주식매매 옵션계약서에 따른다.
- (3) 매도인은 계약일에 매수인이 지정하는 증권계좌로 매매대상주식의 주권을 이체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입금계좌(○○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주)A)로 입금한다.
- (4) 주식매매의 효력은 본 계약일에 발생한다.

제2조(후속합의)

- (1) 매수인은 매매대상주식과 2017. 7. 7.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한 회사 주식에 대하여 매도인의 동의 없이는 매각할 수 없다.
- (2) 매수인이 2017. 7. 6. 이전에 보유한 회사 주식에 대하여도 매도인의 동의하에 매각할 수 있다.
- (3) 매수인은 본 계약일로부터 10년간 회사를 퇴직하거나, 동종업체 겸업을 할 수 없다.
- (4)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는 각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계약의 협상, 체결 이행에 소요된 각 당사자의 비용 또한 각자 부담한다.

라. C은 이 사건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행사일인 2019. 3. 20.의 종가인 5,160원과 행사가격인 4,020원의 차액인 1,140원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하여 총 7,980,000,000원(= 1,140원 × 7,000,000주)의 행사이익(이하 '이 사건 매수청구권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얻었다.



마. 원고의 개인지급대장(3월재직급여)에는 C이 2019. 3. 20. 원고의 재무팀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가 같은 날 퇴사하였고, 특별상여로 7,98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9. 4. 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이 사건 매수청구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2019. 4. 10. 피고에게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신고·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C에 대한 특별상여가 기재된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매수청구권 행사이익이 2019년 3월분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 근로소득임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23. 9. 18. 원고에게 7,9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9년 3월분 주민세(종업원분) 59,508,050원(가산세 포함)을 수시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10.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1.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수청구권은 콜옵션(Call Option)으로서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인 스톡



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과는 그 형식과 법률상 의미가 다른바, 콜옵션 행사에 따른 이 사건 매수청구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외국 기업들의 국내 자회사들인 판시와 같은 회사(이하 '국내 자회사들'이라 한다)의 임직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국내 자회사들의 주식을 67% 내지 100%씩 보유하고 있던 각 외국 기업들(이하 '외국 모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원고들이 일정한 기간 국내 자회사들에서 근무할 것과 원칙적으로 국내 자회사들과 고용계약이 해지되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도 그 효력을 상실하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각각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실제 취득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 상당의 이익(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얻은 사실을 확정하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 자회사들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모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들이 국내 자회사들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들과 외국 모회사들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어 고용계약상의 사용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가 다르다거나 위 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수청구권은 이 사건 옵션계약서상 콜옵션이라고 명칭하고 있긴 하나 그 실질은 스톡옵션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 본질적으로 이 사건 매수청구권 행사이익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콜옵션(Call Option)과 스톡옵션(Stock Option)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파생상품의 기본적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옵션(Option)에 대하여, "당사자 어느 한 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장래 일정한 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기초자산을 일정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콜옵션(Call Option)이라 하고, 매도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풋옵션(Put Option)이라 한다. 콜옵션과 풋옵션을 발행하는 매도자는 보험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그 매수자는 보험가입자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

옵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기초자산'이라고 하고, 사전에 정해진 기초자산의 매수·매도가격을 '행사가격'이라고 한다. 옵션매수인이 옵션 매수에 대한 대가로 옵션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프리미엄'이다. 옵션 매수자는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대신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며, 옵션 보유자라고 한다. 옵션 매도자는 옵션을 발행하여 매도하고 그 대가를 프리미엄으로 받으며, 옵션 발행자라고 한다.

나)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이제까지 제공하거나 장래 제공할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행사기간 내에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일정한 분량의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임직원에게 대한 보수지급의 한 방법으로서 채택되고 있다. 즉,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주식의 시가가 스톡옵션 행사가액을 상회할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시가와 스톡옵션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에서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



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스톡 옵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콜옵션으로 회사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콜옵션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스톡옵션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회사 주식의 시가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회사의 실적이 그 주가를 형성하는 중대한 요소의 하나이고 그러한 기업의 실적은 임직원이 당해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능력 있는 임직원의 계속 근로가 그 실적의 향상 나아가 주가의 상승에 공헌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믿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매수청구권 행사이익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인지 여부

원고는 기업가치의 극대화 등 회사경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C과 이 사건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목적은 근본적으로 C의 이 사건 회사(자회사) 및 원고(모회사)에 대한 공헌에 보답하는 한편, 장래 근로의 계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옵션계약 및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매수청구권은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고, 그 행사기간은 위 옵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의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원고의 동의 없이 매도할 수 없고, C은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하거나 동종업체 겸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원칙적으로 C의 근로의 계속을 이



사건 매수청구권 행사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

원고가 C에게 부여한 이 사건 매수청구권은 C의 경제적 이익을 주식의 시가와 결부시킴으로써 필요한 인재를 확보·유지하는 한편, 이 사건 매수청구권을 부여받은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실적향상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도록 노력하게 하고, 그러한 노력에 의하여 주가가 상승할 경우 C이 이 사건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행사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에게 이 사건 매수청구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매수청구권 행사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인바, C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행사이익을 기대하여 이 사건 매수청구권을 부여받고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매수청구권 행사이익의 발생 유무 및 액수는 이 사건 매수청구권 부여 후의 주가의 변동 및 C의 이 사건 매수청구권 행사시기에 대한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고, C이 제공한 근로의 질 내지 양과 반드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C이 일단 이 사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주식을 사전에 정하여진 행사가격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행사시점에 확정된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C에게 부여하며, C은 그 결과로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는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매수청구권 부여 당시 이 사건 매수청구권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C에게 권리행사시점에 있어서의 주가와 권리행사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이전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C은 이 사건 매수청구권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매수청구권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경제적 희생을 지불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C의 경제적 이익과 원고의 경제적 희생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C이 얻은 이 사건 매수청구권 행사이익은 C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C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이 C이 얻은 경제적 이익과의 사이에 결정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제17호를 신설하여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스톡옵션의 성격을 지닌 이 사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고용계약상 사용자와 이 사건 매수청구권 부여자가 상이하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는 C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이 원고를 위하여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를 처리한 사실도 없는바, 원고가 C의 고용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매수청구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에 관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여, 상여, 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사용자와 급여 지급자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소득세법은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것은 각 소득을 그 원천 내지 성질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소득금액의 계산, 세율의 적용 등에 있어서 각각의 담세력의 차이를 고려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급여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소득의 성질이나 담세력에 어떠한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사용자와 급여 지급 주체가 일치될 것을 요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와 급여 지급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급여가 근로의 대가 내지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작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에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이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제공한 노무의 대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건대, 원고는 C이 근무하던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모회사로서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자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원고의 자산 일부를 형성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 임직원의 노력에 의해 이 사건 회사의 실적이 향상될 경우 원고의 자산가치를 증가시켜 원고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자사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자기 회사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장래 양질의 근



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스톡옵션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자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인 C에게 부여한 이 사건 매수청구권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제공된 C의 비독립적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이 사건에 있어서 사용자와 이 사건 매수청구권 부여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수청구권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판사 김○○

판사 손○○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등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권면액)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 끝.